

2023 김춘환의 完打
FORTUNE 슬림한 조문집(전면개정판)
변리사 특강

민사소송법의 새로운 기준
김춘환 교수의 변리사시험 강의를 시작됩니다.
민소법은 누구나 가르칠 수 있지만, 아무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19년간의 민소법 시험의 Know-how로 반드시 답안지에 써야 하는 부분을 짚어 드립니다.
열정만 갖고 오십시오. “이름값”이 아닌 “실력”을 키워 드립니다.

□ 강의 일정, 대상, 교재 및 특징

1. 일정 : 매회 저녁 7:00 ~ 10:30, 총 10회

4월 18일(화, 개강), 20일(목), 25일(화), 27(목)

5월 2일(화), 4일(목), 9일(화), 11일(목), 16일(화), 18일(목)

2. 교재

2023 김춘환 完打 FORTUNE 슬림한 조문집(학연, 4월 14일 출간 예정)

선착순 10명 무료 제공

3. 대상

- (1) 민사소송법 조문 전반을 알고 싶은 수험생
- (2) 변리사 민소법 이해가 어려운 수험생
- (3) 민법 공부시에 민소법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험생

4. 강의 특징

- (1) 민소법 조문을 중심으로 한 민소법시험에 대한 전반적 이해 도모.
- (2) 민사소송법 공부 시에 가장 중요한 민소법 조문에 대한 이론, 판례, 사례 등을 정리.
- (3) 2차 민소법 공부 시에 답안지에 반드시 현출되어야 할 “핵심 KEY

WORD”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강의.

□ 강의 개설 취지

민사법 강의를 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은 시험의 답은 ‘조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문을 의외로 잘 모르고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란한 이론, 판례 등은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왜 그러한 이론, 판례가 있는지를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국가에서 모든 학설, 판례는 ‘조문’에 대한 해석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특히 수험 공부에서 ‘조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2023 FORTUNE 민사소송법 조문집 특강을 준비하였습니다.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들으실 수 있으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변리사 민사소송법 小考(소고)

1. 들어가며

민사소송법은 국가가 법원이라는 재판기관을 설치하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민사분쟁을 강제로 해결하는 절차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절차를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실무적으로 변리사가 심결취소소송에서 변호사보다 훨씬 더 많은 소송대리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¹⁾, 기본적인 민사소송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나중에 실무에 나가서도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저의 강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법과대학 시절부터 민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실무과목이라는 이유 등으로 강의를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았고(현행 로스쿨 체제에서는 더 심각해 보입니다), 또 소송법은 어렵다는 막연한 선입견으로 인해 부담스러운 과목이라는 생각이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다른 법 과목도 마찬가지로 특이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실한 개념 정립, 무엇보다 민사소송법 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된다면 그리 어려운 과목은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변리사 2차 민사소송법의 출제 경향 및 공부방법

1) <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ListAction.work?gubun=44>

2) 특허법원에서 공지된 판결 10건 정도를 확인하여 보면 변리사가 대리한 사건이 6건,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이 2건, 변호사와 변리사가 양측 당사자에 각각 선임된 사건이 2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건이 아닌 명수로 계산하면 그 사건 10건을 31명의 변리사, 6명의 변호사가 대리하였다. 특허법원 주요판결 게시판 2022.12.9. 및 12월 12일 작성된 판결 10건 : 2021허6764, 2022허2233, 2022허1858, 2021허5594, 2021허6795, 2021허4461, 2022허2455, 2022허1667, 2021허5242, 2021허3987

2022년을 기준으로 59회가 출제되었으므로, 기출문제들은 상당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험들과는 달리, 소위 찍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쟁점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험가에서 얘기하듯이, ‘어떤 강사가 어떤 문제를 찍었는데 그대로 출제가 되었다’는 허황된 소문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민사소송법에 대한 탄탄한 기초 위에서 중요주제에 대한 확실한 이해 및 답안지에 대한 현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3. 논리전개 내지 논증의 틀(폼)

(1) 이하의 내용은 제 대학원 지도교수님³⁾의 글이니 민사소송법에 대한 기본강의를 들을 때 상당히 유용할 것입니다.

(2) ‘○○제도에 대하여 논하라’는 문제에서 1.의의 2.취지, 근거, 법적 성질, 기능 3. 요건 4. 효과 식의 정형적인 폼이 있듯이, 사례문제에서도 그 사례문제의 성질에 따라 몇 가지의 폼을 미리 만들어 두고 탄력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p>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제의 분석(문제점의 추출⇒논점의 문제제기, 문제의 소재) 2. 논점 전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의, 원칙, 예외(수정), 규범 (2) 문제로부터 요건정립, 취지, 논점의 결론, 반대설, 반대설 비판 (3) 전제, 이론적 귀결, 부당성 지적, 규범, 허용성, 특수성 3. 사안 적용 - 삼단논법의 귀결 4. 사안 해결 - 물음에 대한 정확한 해답 긴요

4. 공부방법상의 유의점

- (1) 제도나 논점에 대해 왜(WHY?)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고, 취지 등에 대하여 생각한다.
- (2) 유사한 제도나 논점의 상호 비교, 구별 표지 정확하게 이해, 아이덴티티 확립
- (3) 제도나 논점의 골격을 먼저 기억하고, 거기에 공부가 더해 감에 따라 살을 붙혀 나감
- (4) KEY WORD 중심의 공부(다만 답안지에 KEY WORD만 쓰면 절대 안 됨)
- (5) 논점의 학설 이름, 개수 정확하게 기억
- (6) 判例 태도 정확하게 기억(우리 판례는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 (7) 쓸데없이 너무 많은 것을 알려 하지 말고(다침!!!)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8) 모든 공부는 결국 시험장에서의 답안작성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여 평소 답안작성연습을 꾸준히 하고, 책을 읽어 나갈 때에도 답안작성에 필요한 것을 찾는 방식으로 공부하고(효율적인 마킹), 결과물을 간결하게 머리 속에 정리하여 두고, 자주 되새김질을 한다.

□ 문의 및 질문

DAUM카페 : 김춘환 마스터팀, cafe.daum.net/chunzivilprozess

3) 김○○, P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제43회·제48회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행정고등고시 출제위원